체결 후 그 결과에 대한 시정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원시조례안에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등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제처 2016. 12. 2. 의견제시 16-0328 참조).

따라서, 수원시조례안에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등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 및 해양주변 지역의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을 위한 의원발의 법안

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Ⅰ | 입안 배경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대부분 화물(71%)과 어선(25%)으로부터 배출된다고 한다. 이를 항만별로 살펴보면, 국내 주요 무역항이 위치한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배출량이 전국 선박 배출량의 27%, 항구 배출량의 49%를 차지하고, 이를 다시 행정구역별로 선박의 배출비중을 구분하면 부산 47%, 인천과 울산 각각 9%라고 한다.

또한 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가 연간 17만톤에 달하고, 전국 해역에는 유기물과 중금속 오염물질을 함유한 퇴적물이 약 8백만톤 쌓여있고 이로 인하여 어민들이 입는 피해는 물론 해수욕장까지 폐합판이 유입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23일 강병원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6월 21일 김성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이러한 항만에서의 대기오염 관리와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발의된 법안이다.



Ⅱ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 대기관리권역 지정(안 제9조)

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 시행(안 제10조)

가.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나.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대기관리권역 안의 사업장 관리(안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저공해화하고, 시 · 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하며, 행정 · 공공기관은 토목 · 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함.

4. 대기관리권역 안의 항만 등의 관리(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가.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한 연료유의 황함유기준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운영자가 정박 중인 선박을 위한 육상전원공급 장치 등 선박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선박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 및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 · 도 지사는 시 · 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Ⅲ |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시행 (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폐기물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 시행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해역관리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

2. 폐기물의 해양배출 원칙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정해역에서 배출하는 경우
-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고 해역관리청에 보고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려는 장소에 배출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고립처분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에 저장하는 경우

3. 시장 · 군수 · 구청장, 해역관리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수거명령(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할구역의 해안가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해안폐기물 발생의 원인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부유폐기물을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도록 하되, 부유폐기물 발생의 원인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침적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침적폐기물 발생의 원인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4.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또는 정화명령 (안 제1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도록 하되, 해양오염퇴적물 발생의 원인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 해양환경 유해물질 사용허가(안 제19조)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철분 등의 물질을 해양에 살포하거나 놓아두는 등의 해양배치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6. 폐기물 해양배출업,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업의 등록제 도입 등 (안 제20조 및 제26조)

가. 폐기물해양배출업, 침적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배출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7. 해양폐기물 정보 등의 디지털화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함(안 제30조).

Ⅲ | 입법전망

두 법안은 제정형식으로 발의되었으나 유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이미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도권 대기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전국의 항만 중 대기오염정도가 심각한 지역으로 확대 · 적용하는 것이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도 해양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처리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후 재활용하는 등 고도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법률은 제정과정에서 각각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현재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항만주변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에 있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 주변의 정확한 오염정도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정도를 2018년 3월까지를 목표로 정밀조사하고 있는데, 정밀조사가 종료되면 이를 근거로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